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(부) 실험·실습 상해보험 신청 안내

Ⅰ 개요

우리 대학은 **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(부)** 실험·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, 사고 발생 시 아래 절차에 따라 보험금(치료비)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보 험 명: 연구실 안전공제(한국교육시설안전원)
2. 보상대상: 이공계열 및 미술대학 학과(부)에 재학 중인 학부생, 대학원생(연구등록생 포함), 외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
3. 보상기준: **실험·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부상·질병·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·신체상 손해를 입은 경우**
4. 보상내용

구분	보상내용
유족급여	• 사고 피해자 1인당 2억원 정액 보상
장해급여	• 사고 피해자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
요양급여	• 사고 피해자 1인당 20억원 실손 보상
장의비	• 사고 피해자 1인당 1천만원 정액 보상
입원급여	• 사고 피해자 1인당 1일당 5만원 보상(3일 초과, 30일 한도)
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	• 약관에서 정하는 중증화상 진단 시 1천만원 정액 보상 • 중등도화상 진단 시 4백만원 정액 보상
추가보상	• 수업료 손실지원금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 • 치료 후 간병비용 지원(최대 30일 한도)

Ⅱ 보험 청구 절차

① 사고 통보(필수)	▶	② 청구 서류 제출	▶	③ 청구 및 처리
사고를 인지한 누구나 **(사고 피해자, 교수, 학과(부), 부서 등)**		**사고 피해자**		**안전팀**
사고 피해자 완치 유무 상관없이 **사고 발생 인지 즉시** 유선 또는 이메일로 *사고통보 (안전팀/종합상황실)		**치료 종결(완치) 후** 성신포탈시스템을 통한 보험 청구 서류/서식 제출		보험금(치료비) 청구 신청 **보험사** 보험금(치료비) 결정 및 지급

*사고통보연락망	수정캠퍼스	운정그린캠퍼스	비고
안전팀 (주간 9시~17시)	02-920-7397	02-920-7868	safety@sungshin.ac.kr
종합상황실 (야간/공휴일)	02-920-2119	02-920-2700	

Ⅲ 보험 청구 시 제출 서류

급여종류		서류명			비고 (발급기관)
공통서류 (필수)		• [서식 1] 공제급여 신청서 • [서식 2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, 위탁 동의서(사고 피해자) • [서식 3] 사고경위서 • 재학(직)증명서			소속기관 (서식붙임)
		• 통장계좌 사본(사고 피해자) • 신분증 사본(사고 피해자) • 하단 피해 유형별 제출 자료			사고 피해자 (서식붙임)
해당시		기관/책임자 선 보상	• [서식 4] 선 보상 확인서 • 계좌이체 내역		
상해	요양 급여	50만원 이하	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 - 처방전 또는 통원(진료)확인서(상병코드 기재) ※ 병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무료 발급 가능	비급여 내역은 '진료비세부내역서' 추가 제출 필요 (3만원 이하 생략 가능)	의료기관 (서식붙임)
		50만원 초과	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 - 진단서(상병코드 기재)		
		※ 동일사고 청구 건당 기준이며,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 불가 **※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**			
	입원 급여	• 입·퇴원 확인서 • 상급 병실 사용확인서(상급 병실 사용 시)			
장해급여		• 후유장해 진단서(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 발급)			
사망	유족 급여	• 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			
		• [서식 5] 공제급여 신청 및 수령 위임장			
		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• 인감증명서 ※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,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각각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 필요			관할구청 및 인터넷 발급
	장의비	• 매장·화장 신고 증명서			
지원비		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지원금	•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확인서 •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내역서(확인서)		소속기관 (서식붙임) 등
		치료 후 간병비용지원금	• [서식 2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, 위탁 동의서(간병인) • [서식 6] 치료 후 간병비용 확인서 • 간병인 인적 사항(관계, 자격) 증빙서류		
		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	• 진단서(중증도 기준과 체표면적 기준 상병코드 기재)		의료기관